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1086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10862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백승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용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23.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664,3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6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D 주식회사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1. 9. E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22844)을 신청하여, 2019. 3. 11. ‘C은 원고에게 5,934,978원 및 그 중 2,874,343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9. 3. 28. 확정되었다.

(2) 2023. 2.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9,664,39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은 2021. 8. 1.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와 자녀들인 G, H, C(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2)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1. 12. 1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2021.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00. 4. 17.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I단체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없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2. 4.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K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하면 C의 상속분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우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기여분 등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망인 재산의 유지보존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에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액배상에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종전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C의 상속지분 2/9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9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억 1,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설정되어 있던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없었다. 따라서 C의 상속지분은 113,333,333원($= 510,000,000\text{원} \times \text{상속지분 } 2/9$)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664,39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664,3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9,664,3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66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동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2층 건아파트

지하층 776.34㎡, 1층 853.81㎡, 2층 내지 20층 각 816.22㎡, 21층 내지 22층 각 614.62㎡

[] 동 철근콘크리트조 옥내 주차장

지하2층 1756.9㎡ 지하1층 1837.31㎡, 지상1층 15㎡

[] 동 철근콘크리트조 전기실

지하1층 183.0㎡, 지상1층 15㎡

[] 동 철근콘크리트조 펌프실

지하1층 63.0㎡

[] 동 벽돌조 노인정

지상1층 76.68㎡

[] 동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무소

지상1층 124.50㎡

[] 동 벽돌조 경비실

지상1층 17.25㎡

(대지권의 복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 54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 59.9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404분의 22.5554 ㎡

1) 원고는 '2022. 12.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21. 12. 1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